

## 참 착한 통장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“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”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(씨티은행)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안내 드립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- ◆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- ◆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본 상품설명서를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안내 드립니다.

### 1 상품 개요 및 특징

- 상 품 명 : 참 착한 통장
- 상품특징 : 예금 잔액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되는 입출금예금 상품입니다.

### 2 거래 조건

구 분	내 용
가입대상	■ 개인
상품종류	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
거래방법	■ 신규 : 영업점 및 모바일뱅킹을 통해 가능합니다. ■ 해지 : 영업점 및 인터넷/모바일뱅킹을 통해 가능합니다.
이자지급시기	■ 예금의 이자는 매월 둘째 주 마지막 영업일에 계산하여 그 다음 날 원금에 가산합니다.
원금 및 이자지급제한	■ 계좌에 <b>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</b>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. 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

	<p>있습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<b>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</b>에는 입금, 출금, 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.</li> <li>■ 통장이 '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'에서 정의한 <b>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</b>될 경우 이체, 송금지연,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</li> </ul>													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이 예금의 일별 최종 잔액에 따라 기본이율이 결정됩니다.</li> </ul> <p>(연, 세전, 2021년 12월 21일 현재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6">일별 최종잔액</th> </tr> <tr> <th></th> <th>5백만원 미만</th> <th>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</th> <th>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</th> <th>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</th> <th>5천만원 이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b>기본 이율</b></td> <td><b>0.01%</b></td> <td><b>0.10%</b></td> <td><b>0.10%</b></td> <td><b>0.10%</b></td> <td><b>0.20%</b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기본이율</p> <p>■ <b>과거 평균 이자율</b></p> <p>과거 6개월간(2021.02~2021.07) 고객에게 실제 지급된 평균 이자율은 0.27%(연, 세전)입니다.</p> <p>■ <b>이율 적용 예시</b></p> <p>신규일에 6천만원 입금 후 신규일 다음 날 5천 6백만원을 인출하였다면, 신규일의 최종잔액 6천만원에 대해서는 0.20%(연, 세전)가, 신규일 다음날의 최종잔액 4백만원에 대해서는 0.01% (연, 세전)가 적용됩니다.</p>	일별 최종잔액							5백만원 미만	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	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	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	5천만원 이상	<b>기본 이율</b>	<b>0.01%</b>	<b>0.10%</b>	<b>0.10%</b>	<b>0.10%</b>	<b>0.20%</b>
일별 최종잔액																			
	5백만원 미만	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	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	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	5천만원 이상														
<b>기본 이율</b>	<b>0.01%</b>	<b>0.10%</b>	<b>0.10%</b>	<b>0.10%</b>	<b>0.20%</b>														
이자 산출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이자계산기간 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 이율을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이자지급일에 지급합니다. 단, 이자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.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이자계산기간</th> <th>이자결산일</th> <th>이자지급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지난 이자지급일(또는 신규일)로부터 금번 이자지급일 전일까지</td> <td>매월 둘째 주 마지막 영업일</td> <td>이자결산일의 다음 날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이자계산기간	이자결산일	이자지급일	지난 이자지급일(또는 신규일)로부터 금번 이자지급일 전일까지	매월 둘째 주 마지막 영업일	이자결산일의 다음 날												
이자계산기간	이자결산일	이자지급일																	
지난 이자지급일(또는 신규일)로부터 금번 이자지급일 전일까지	매월 둘째 주 마지막 영업일	이자결산일의 다음 날																	
예금자보호 여부	<p><b>예금 (보호)</b></p> <p>예금보험공사 <b>보호금융상품</b> 1인당 최고 5천만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<b>보호한도</b>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<b>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</b></li> </ul>																		

		<b>1 인당 “최고 5 천만원”이며, 5 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</b>
세제혜택	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합니다.(모든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)</li> <li>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</li> <li>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.</li> </ul>
양도 및 담보제공	양도 가능 담보제공 불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양도 가능합니다. (단,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양도가 불가능함)</li> <li>■ 담보제공이 불가능합니다.</li> </ul>
거래증지계좌 편입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은행은 이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증지계좌로 별도 관리하여 <b>입출금, 잔액조회, 이관 등의 거래를 제한</b>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■ 다만, 고객께서 위 계좌로 입출금, 잔액조회, 이관 등을 은행창구를 통해서면으로 신청한 때에는 은행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를 받아 <b>금융거래 목적 및 본인 확인 후</b>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1) 예금잔액이 10,000 원 미만이며,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</li> <li>(2) 예금잔액이 10,000 원 이상 50,000 원 미만이며, 2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</li> <li>(3) 예금잔액이 50,000 원 이상 100,000 원 미만이며, 3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</li> <li>(4) 예금잔액이 100,000 원 이상이며, 4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</li> </ul> </li> </ul>
계약해지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본 예금 계약의 해지는 <b>영업점 및 인터넷/모바일뱅킹</b>을 통해 가능합니다</li> </ul>
자료열람 요구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<b>권리구제를 위한 목적</b>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</li> </ul> </li> <li>■ 은행은 법령, 제 3 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<b>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</b></li> </ul>

휴면예금 및 출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이자지급을 포함한 <b>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</b>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<b>“서민금융진흥원(국번없이 1397)”에 출연</b>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</li> <li>■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(<a href="http://www.sleepmoney.or.kr">www.sleepmoney.or.kr</a>)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.</li> </ul>
연계·제휴 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해당사항 없음</li> </ul>
기타 주요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무통장식 신규 또는 전환의 경우 이전에 발급한 통장은 사용할 수 없으며, 무통장식 계좌의 거래내역조회를 위하여 한국씨티은행의 “모바일/인터넷뱅킹 서비스”에 가입하여야 합니다.</li> </ul>

### 3 | 유의 사항

- 상기 금리는 은행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금리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금리가 변경일부터 적용됩니다. 변경된 금리는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영업점 및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.
- 이 상품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은행의 사정에 의해 상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등 관련 사항을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.
- 이 상품은 한국씨티은행 수신상품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.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**고객상담센터(1588-7000)** 또는 **인터넷 홈페이지([www.citibank.co.kr](http://www.citibank.co.kr))**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**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(국번없이 1332)** 또는 **e-금융민원센터(<https://www.fcsc.kr>)**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 <부록>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용어	설명
압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■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</li></ul>
가압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■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</li></ul>
질권설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■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, 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</li></ul>
출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■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.</li><li>■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</li></ul>
경과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■ 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 *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</li></ul>